■ 법인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63호의13서식] (2016.03.07 개정)

조정반 [ ]지 정 / [ ]변경지정 신청서

( 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지정신청 (매년 11월 30일) :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신청 (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 또는 설립시) :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변경지정신청 :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

대표자 및 구 성 원	성 명	날 인	등록번호 / 관리번호	사업자등록번호 / 주민등록번호	사업장 소재지 / 주 소
대 표 자					
구 성 원					
구 성 원					
구 성 원					
구 성 원					
구 성 원					

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50조의3[□제1항, □제5항]에 따라 조정반 [□지정, □변경지정]을 신청하오니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(뒤쪽)

조정반 지정변경 내용 및 사유

내용	변경 전	
	변경 후	
사 유		

※ 유의사항

1.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원래의 지정서를 첨부합니다.
2. 변경 후 내용을 앞쪽에 적습니다.
3.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뒤쪽은 적지 않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